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9월 9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오상균)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부과기준과 조정범위를 변경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 등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현행 10분 단위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
- 2)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30%에서 50%로 확대
- 3)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조정범위 변경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의 제공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변경하고,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30%에서 50%로 확대하였으며,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할인규정을 신설함.

○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제를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2012. 1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4~5분을 이용하고도 10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연 1억 6천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,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30%에서 50%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 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또한 교통혼잡 완화, 주차난 해소, 환경오염 해소 등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(Car-Sharing)에 대한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승용차 공동 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근거와 50/10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. 본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과 승용차 공동 이용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요금 부담 완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공용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주민홍보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세분하여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,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승용차공동이용(Car-Sharing)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 향상을 도모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함(별표 1).
- 나.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을 “30퍼센트범위 안에”를 “50퍼센트 범위 안에서”로 변경(별표 1 비고 제3호 바)
- 다.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 규정을 신설 (별표 1 비고 제21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3.7.18 ~ 8.7, 20일간) : 의견없음
- 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- 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 중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주차장법」”으로, “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조례에”를 “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”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도·감독한다”을 “연1회 이상 지도·감독한다”으로 한다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상시”를 “항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2”를 “법 제1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영 제7조제2항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)”를 “특별회계(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」)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 - 1구획당)

구분	노상주차장				노외주차장		
	1회 주차시 5분당	1일 주차권	월정기권		1회 주차시 5분당	월정기권	
			주간	야간		주간	야간
1급지	500	20,000	200,000	-	400	250,000	100,000
2급지	250	15,000	100,000	-	250	180,000	60,000
3급지	150	9,000	80,000	-	150	100,000	40,000
4급지	100	6,000	50,000	-	100	환승목적 주차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
5급지	50	3,000	30,000	20,000	50	30,000	20,000

※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% 이하로 하며,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.

〈비 고〉

1.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.
2.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,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3.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1급지 : 경인로·선유로·노들로·도림로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
 - 나. 2급지 :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의 주차장(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) 중 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 - 다. 3급지 : 1·2·4·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
 - 라. 4급지 : 지하철환승주차장(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) 중 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 - 마. 5급지 : (1)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
(2)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
- (3) 1·2·3·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
 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**한정하여**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- 바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
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**50% 범
 위 안에서** 조정할 수 있다.
- 사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
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.
4.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·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
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**따른다.**
5. 삭제
6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**대해서는** 주차요금의 100분의 80
 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
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**사람으로서**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
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
사람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2호
 및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
 지한 **사람**
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
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**사람**
- 라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
 발행한 5·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**사람**
7.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**따른** 경형자동차와 「수도
 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**따른** 저공해자동차에 대
 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.
 다만,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
 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,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
 금을 면제한다.
8. 주차요금의 할인·할증 등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
 산하지 아니한다.
9.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**사람으로서**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
 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10. 삭제
11. **둘 이상의**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
 다.
12.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(월·화·수·목·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) 참여차량으

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한다. 다만,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3. 구청장은 주한외교관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14.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**한정하여** 2,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.
1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**한정하여**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.
16.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17. 구청장은 개인택시·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**범위에서**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·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.
18. 구청장은 구청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19.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20.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21. 구청장이 지정한 「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」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,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(“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”란 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<u>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주차장법」 ----- ----- <u>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</u> -----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의2 (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<u>지도·감독한다.</u></p>	<p>제4조의2(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) ----- ----- <u>연1회 이상 지도·감독한다.</u></p>
<p>제5조(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) <u>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5조(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의2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<u>상시</u>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의2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<u>항상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주차장의 표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법 제11조제2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</u>는 다음 각 호의</p>	<p>제10조(주차장의 표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11조제2항</u>----- -----</p>

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, 주차장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

제25조(보조의 대상)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말한다)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(아파트를 제외한다)의 소유자 중 다음과 같다.

1. 2. (생략)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2항-----

-----.

제25조(보조의 대상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
-----.

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12. ~ 13. (생략)

14.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2,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.

1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.

16. (생략)

17. 구청장은 개인택시·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·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18. ~ 20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-----.

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 사람으로서

-----.

10. 삭제

11. ----- 둘 ----- 이상의

-----.

12. ~ 13. (현행과 같음)

1 ----- 4 -----.

----- 한정하여 -----.

1 ----- 5 -----.

----- 한정하여 -----.

16. (현행과 같음)

1 ----- 7 -----.

----- 범위에서 -----
-----.

18. ~ 20. (현행과 같음)

21. 구청장이 지정한 「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」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,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(“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”란 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)